

#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(재일 2012-1) 일부개정예규안

## 1. 개정이유

-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제출 가능한 멀티미디어 자료의 파일형식에 ‘M4A’ 를 추가하고, 파일 제출 용량을 확대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하고, 전자소송 홈페이지 전자제출이 용이하도록 함

## 2. 주요내용

-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제출 가능한 멀티미디어 자료 파일 형식에 ‘M4A’ 를 추가함(안 제3조제1호나목)
-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제출 가능한 전자파일의 제한 용량이 10MB인 부분은 20MB로, 50MB인 부분은 100MB로 변경하여 각 현재 수치의 2배로 확대함(안 제3조제3호가목 및 제3조제3호나목)

## 3.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(재일 2012-1) 일부개정예규안

붙임과 같음

## 4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
(재일 2012-1) 일부개정예규안

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(재일 2012-1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나목에 “M4A” 를 추가한다.

제3조제3호가목 중 각 “10MB” 는 각 “20MB” 로, “50MB” 는 “100MB” 로, 제3조제3호나목 중 “50MB” 는 “100MB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예규는 2023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 (파일 형식 등) (생략)</p> <p>1. 파일 형식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멀티미디어 자료: AVI, WMV, MPG, MPEG, MP4, ASF, MOV, WMA, MP3, PPT, <u>PPTX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용량</p> <p>가. 1파일 당 용량은 <u>10MB</u>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, 이를 초과할 경우, <u>10MB</u> 이하 크기의 파일로 나누어서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 멀티미디어 자료는 1파일 당 <u>50MB</u>까지 제출할 수 있다.</p> <p>나. 전자문서 1건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전체 파일의 용량 합계가 <u>50MB</u>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다. (생략)</p>	<p>제3조 (파일 형식 등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파일 형식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----- ----- -----<u>PPTX, M4A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용량</p> <p>가. -----<u>20MB</u>----- ----- <u>20MB</u>----- ----- -----<u>100MB</u>----- -----.</p> <p>나. ----- -----<u>100MB</u>----- -----.</p> <p>다. (현행과 같음)</p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	
연락처	(02) 3480 - 1416